민원 인쇄
인쇄자: 김명호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6-0864925
신청일	2026-06-18 20:00:25
신청인	김명호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유선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서부지검 김은성 개돼지 검사의 각하 처분에 항고한다
내용	항고 장 항고인(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서청원, 서울 서부지검 검사 (추가)공범: 김은성, 서울 서부지검 검사 제목: [형법] 제123조의 2(법 왜곡) 고소인은 서청원 고소 사건에(첨부자료1) 대한 김은성의 각하 통지에(첨부자료2) 대하여 항고하며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 입증한 김은성을 공범으로 추가한다. 항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항고 이유 1. 피의자 서청원은 서울 은평경찰서장 김현환의 주차장법 위반 및 불법건축물 사건(첨부자료3) 담당 검사로서, 현행범 김현환의 범죄를 100% 명백하게 서류상으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각하”하는 법왜곡죄를 저질렀다(첨부자료4). 2. 그에 대해 고소인이 서청원을 법왜곡죄로 고소하였더니, 동료 검사 김은성이 담당, 역시나 “묻지마 각하”하는 법왜곡죄를 저질렀다. 이에 김은성을 (김현환 범죄 묵인한)서청원의 공범으로 추가한다. 항고인 김명호 2026.6.18 첨부자료: 1. 서청원 고소장 2. 김은성 각하통지(서부지검 2026형제12650) 3. 김현환 고소장 4. 서청원 각하통지(서부지검 2026형제11091)
첨부 파일	김현환고소장.pdf 서청원각하통지.jpg 김은성각하통지.jpg 서청원고소장.pdf

기피부서 정보

기피부서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기피유형	공무원 비리
기피자 정보	이장근 서청원 김은성
기피사유	이장근은 서청원 김은성 검사 새끼 밑의 수사관으로 은평 경찰서장 김현환 범죄 감싸기로 작당한 서청원과 김은성의 의중을 거스를 수 없다. 괘씸죄가 판치는 이 좇-같은 나라에서 당장 불이익이 떨어질 판인데...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